

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(비전임교원) 임용 및 인건비 관리 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(비전임교원)의 임용 및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“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”이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요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며, 총장이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

제3조 (직명 및 소속) ① 전임연구인력의 직명은 ‘전임연구교수’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원기관의 사업목적 및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교수, HK연구교수, 계약교수, 박사급 연구원, 석박사후 과정생, 명예연구교수, Joint Appointment 교원(이하 “JA교원”) 등 직명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② 전임연구인력의 기본 소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연구소 또는 사업단(센터)으로 할 수 있다.

제4조 (임용절차 및 임용서류) ① 전임연구인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과 계약에 의하여 임용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임용 45일 이전에 채용(임용)요청서(별지 제3호 서식, 제4호 서식) 및 연구과제별 인건비편성표(별지 제2호 서식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전임연구인력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 · 모집 · 심사 · 추천 · 임용의 절차를 거친다. 단,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선정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전문인력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④ 임용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임용지원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학위증명서 각 1부
3. 경력증명서(해당시) 1부
4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
5. 기본증명서
6. 개인정보수집 · 이용 · 3자 제공 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
7. 급여수령계좌사본, IRP계좌사본
8. 증명사진
9.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별지 제9호 서식)
10. 기타 요청서류

⑤ 공개채용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은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 7조에서 제 9조까지를 준용한다. 단, 심사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.

⑥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 또는 적용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
⑦ 명예연구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 (임용기간) 전임연구인력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1년 미만의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,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.

제6조 (계약) 전임연구인력은 총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, 계약내용은 본교 「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7조 (급여) ① 연구책임자는 전임연구인력 임용 신청 시 인건비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전임연구인력 월지급액은 지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
③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기준(별표1)을 적용한다.

제8조 (재임용) 재임용 대상자는 평가절차를 거치며, 평가절차와 방법 등은 본교 「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9조 (계약변경)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시 연구책임자는 변경 30일 전까지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산정표(별지 제2호서식)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참여율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경
2. 인건비 재원 과제 변경
3. 기타 변경

제10조 (면직) ① 전임연구인력의 면직은 면직 15일 전까지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사직서 및 퇴직보안서약서(별지 제10호 서식)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 요청이 없을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면직된다.

③ 사업의 중단 또는 연구과제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을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도 면직할 수 있다.

제11조 (퇴직금) ① 전임연구인력의 임용 시 인건비 재원에 퇴직금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전임연구인력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.

③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, 월 퇴직적립금을 중도퇴직 정산하여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. 단, 한국연구재단 등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기관 규정을 우선한다.

제12조 (기타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기 임용자의 경우, 2019년 8월 1일 이후 최초 재임용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진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1.06.01.>

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(비전임교원) 인건비 산정 기준

(단위: 천원)

임용 구분	임용 권자 (고용 자)	직급 구분	동등 경력 인정기준	월 기준 인건비 (계상율 100% 기준)	(예산편성용) 4대보험기관부담금, 월퇴직적립금포함	
					1개월 기준	12개월 기준
전임 연구 인력	총장	박사급 1호	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-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	4,500	5,321	63,852
		박사급 2호	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자 -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	5,500	6,504	78,048
		박사급 3호	-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 -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의 경력자	6,500	7,686	92,232
		박사급 별호	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한 본교 전임교원 교수급 경력 인정자	8,000	9,459	113,508

1)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: 월 급여 + 월 4대보험 기관부담금 + 월 퇴직적립금

① 월 급여 = 기준단가(월 급여상한액) × 계상율(%)

② 월 4대 보험 기관부담금(예상액) = 월 급여×9.9% [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]

※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변동액은 해당 연구과제에서 추가 계상해야 함

③ 월 퇴직적립금 = 월 급여 ÷ 12 [천원단위 미만금액 올림]

※ 퇴직금 = 월 퇴직적립금 × 임용기간(월)

2) 경력환산 기준

① 합산경력의 1년 미만은 절삭하며, 부족 일수가 15일 이내인 1년 미만의 합산경력은 1년으로 인정함.

② 동일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은 그 중 한 경력만 인정함.

3)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문 자격증소지자, 특수한 경력자는 해당 직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인정하거나 별도의 월 기준액을 계상하여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.

4)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월 기준액을 상향 계상 가능함.



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

지원직종	전임연구교수	접수번호	지원자 작성 금지
------	--------	------	-----------

지원분야	소속	전공	충원 분야
	산학협력단		

성명	(한글) (영문)	생년월일	
현주소			
연락처	(자택) (핸드폰)	이메일주소	
현 직장		현 직장 직위	

학력 구분	학교명	학부(과)	전공	입학일자 (년. 월. 일)	졸업(수료)일자 (년. 월. 일)
				. . .	. . .
				. . .	. . .
				. . .	. . .
				. . .	. . .
				. . .	. . .

취득 자격증 이름	자격증 발행기관	취득 일자(년. 월. 일)
		. . .
		. . .
		. . .
		. . .

경 력 사 항

[illegible]

※ 경력증명서(원본)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할 것.

※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거나,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
자 기 소 개 서

1. 인적사항(학력 사항, 인화력, 교육관 및 가치관 등)

※ A4용지 1매를 기준으로 작성

2. 본인의 전체 경력 사항 서술 및 지원 전공 분야와의 적합성

※ A4용지 1매를 기준으로 작성

(별지 제2호 서식) 연구과제별 인건비 편성표

※ 엑셀 서식 별첨

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(비전임교원) 임용 요청서

1. 인적사항

성명	한글 : 영문 :		
생년월일		국적	
주소		연락처	
학력	학위명	취득일	취득기관
	학사		
	석사		
	박사		
경력	기간	부서	직위
	. . . ~ . . .		
	. . . ~ . . .		
	. . . ~ . . .		

2. 참여과제(사업)명

구분	지원기관	과제번호	연구책임자	연구기간	인건비 예산 (단위: 천원)	비고
과제1	한국연구재단	V2021-0001	홍길동	21.01.01 ~ 20.12.31.	24,834	
과제2	한국산업기술평가원	V2021-0002	김길동	21.01.01 ~ 21.12.31.	24,834	

※ 작성공간이 부족할 경우 본 서식의 칸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.

3. 임용요청내역

요청내역	임용 구분	직급 구분	임용기간	과제번호	총 참여율	인건비 내역 (단위 : 천원)				인건비 예산 총액
						월 급여	4대보험 (기관)	월 퇴직금	계	
☐ 신규임용 ☐ 재임용	연구원	전임	2021.01.01 ~	A2021-0001	50%	3,500	347	292	4,139	49,668
		연구원	2021.12.31 (12개월)	A2021-0002	50%					

4. 공개채용 예외 사유(연구계획서 제출)

붙임: 연구과제별 인건비 편성표(별지 제2호 서식)

위와 같이 인건비 예산 및 참여율에 따라 연구원 임용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연구책임자 : (인)

산학협력단장 귀하

(별지 제6호 서식)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(비전임교원) 면직 신청서

산학협력단 전임연구인력 면직 신청서

1. 면직대상자

이름 (개인번호)	생년월일	임용기간	면직일자	면직사유

2. 퇴직급여

퇴직적립금	지급처(계좌)	비고
0	-	-

붙임: 사직서 1부

위와 같이 연구원 면직을 신청합니다.

20 ㄱ ㄴ ㄷ

연구책임자 : (인)

산학협력단장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1. 이용기관 명칭 : 국민대학교
- 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교원 채용 결격사유 조회
- 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결격사유 유무 조회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
(필요시 기재사항)

주민등록 번호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대상자 성명: (인)

생년월일:

휴대전화 번호:

(별지 제9호 서식)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18. 3. 21.>

(앞쪽)

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대상자	성 명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국적)
	연락처(휴대전화 등)

본인은 ○○기관(시설)(예: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의료기관 등) 취업자(취업예정자)로서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 (서명 또는 인)

_____경찰서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개인정보 수집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)
- 2.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: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- 4.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퇴 직 보 안 서 약 서

소 속:

직위 / 직급:

성 명:

생 년 월 일:

상기 본인은 < _____ >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
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연구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.
2.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 기밀에 대해
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3.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
에 대해서는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.
4. 퇴직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
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서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.
5.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제 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
받을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20 년 월 일

서약인 : (인)

산학협력단장 귀하